

자산건전성 분류기준

1. 자산건전성 분류단계별 정의

가. 정상 : 경영내용,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하여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(정상거래처)에 대한 자산

나. 요주의 :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

- ① 경영내용,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권회수에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(요주의거래처)에 대한 자산
- ② 1월 이상 3월 미만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

다. 고정 :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

- ① 경영내용,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현재화되어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(고정거래처)에 대한 자산
- ② 3월 이상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
- ③ 최종부도 발생, 청산·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 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
- ④ “회수의문거래처” 및 “추정손실거래처”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

라. 회수의문 :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

- ① 경영내용,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(회수의문거래처)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
- ② 3월 이상 12월 미만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

마. 추정손실 :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

- ① 경영내용,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의 심각한 악화로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(추정손실거래처)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

- ② 12월 이상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
- ③ 최종부도 발생, 청산·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 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

2. 주택저당채권 및 학자금대출채권의 건전성 분류

- 가. 원칙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연체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하나, 채권의 특성을 감안하여 연체기간을 기준으로 건전성 분류를 할 수 있다.
- 나. 주거용 주택저당채권은 회수예상가액 대비 대출금액, 담보권 행사 등을 통한 신속한 채권회수조치 가능여부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분하여 건전성 분류를 할 수 있다.
- 다. 기타 자산건별 특성을 감안한 건전성분류 조정은 기타자산의 경우를 준용한다.

3. 유가증권의 건전성 분류

- 가. 공사는 유가증권에 대하여 국내외 신용평가기관의 최근 유가증권 신용등급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.
- 나. 보증부 유가증권은 발행기업 뿐만 아니라 보증인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여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으나, 이 경우 보증인의 보증채무 이행능력, 회수가능성의 제약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.
- 다. 대한민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, 정부투자기관이 보증한 유가증권은 발행기업에 대한 신용등급에 불구하고 “정상”으로 분류할 수 있다.
- 라. 비거주자인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해당기업 소재국의 국가위험을 감안하여 건전성을 분류하며, 외국정부·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한 유가증권 또는 외국정부·국제금융기구가 보증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정부·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한다.

4. 지급보증 및 지급보증대지급금의 건전성 분류

공사는 채권유동화증권에 대한 지급보증과 동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에 대하여 각 채권유동화계획별로 정확한 손실예상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해당 기초자산의 가액(여유자금 운용액 포함) 및 건전성 분류 등을 고려하여 건전성 분류 할 수 있다.

5. 기타 자산의 건전성 분류

동일 거래처에 대한 자산은 동일하게 건전성을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나,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구분하여 건전성 분류를 조정할 수 있다.

- ① 보증부 자산은 거래처 뿐만 아니라 보증인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여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.
이 경우 보증인의 보증채무 이행능력, 회수가능성의 제약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.
- ② 대한민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, 정부투자기관이 보증한 자산은 거래처에 대한 건전성 분류내용에도 불구하고 “정상”으로 분류할 수 있다.
- ③ 원리금 회수가 확실시되는 예·적금, 국공채 및 통화안정증권 담보부 자산은 거래처에 대한 건전성 분류내용에도 불구하고 “정상”으로 분류할 수 있다.

6. 회수예상가액 산정

- 가. 공사는 “고정”이하 분류여신에 대하여 담보물의 적정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·운영한다.
- 나. 회수예상가액은 담보물 처분시 실제 회수가능한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, 담보물 처분에 부대되는 비용을 차감한다.